#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24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이만희·이종배·김소희

김기웅・조은희・구자근

서천호 · 김상훈 · 이성권

권영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·설치하기 위해서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있으며,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.

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,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

0조제10항 및 제11항).

법률 제 호

#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등은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(이하 "자동경고발신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- ①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 ① |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 ①    |
| ~ ⑨ (생 략)           | ~ ⑨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⑩ 시장등은 제5조를 위반한 광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한다)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동으로 알리는 시스템(이하 "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동경고발신시스템"이라 한다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 <u>.</u>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①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       |